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83,542,772	8,506,283
일반회계	214,221,117	6,426,634
특별회계	69,321,655	2,079,650
공기업특별회계	7,581,497	227,445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7,581,497	227,445
기타특별회계	61,740,158	1,852,20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291,494	188,74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16,183	15,485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68,422	26,053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2,445,160	673,35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0,083,408	302,50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565,200	196,956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050,000	61,50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2,415,791	372,474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410,090	12,303
기반시설특별회계	94,410	2,83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략"

제 4 조 "생략"

제 5 조 "생략"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00,54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4,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